

의안번호	제 952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월 4일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2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4일
발 의 자 : 이상식, 윤남진, 송미애
연종석, 원갑희, 이상정
김기창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체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명시(안 제8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2. 1. 7.~ 2022. 1. 14.(7일간)
-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3.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정비·확충 등 농공단지 환경개선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농공단지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
2.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확충·정비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사업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컨설팅
5.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인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

③ 제10조의4 제1호 가목 및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

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

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외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지원
-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입주기업 복리증진을 위한 기숙사 등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기업간담회, 마케팅홍보 지원
-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농공단지 지원)
- 안 제10조(사무국의 설치·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 171,750천원
 - 기숙사 신축 및 리모델링, 체육시설 설치, 사무공간 개선 등
 - 2018년 300백만원, 2019년 80백만원, 2020년 250백만원 지원, 2021년 57백만원
 - 산정근거 : 2018년부터 지원했던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도비 평균액 적용
-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 20,000천원
 - 기업홍보물 제작지원, 농공단지 워크숍, 정기총회 등 지원
 - 산정근거 : 2010년부터 매년 20,000천원 지원이력을 고려하여 산정
-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지원 : 1,230,000천원
 - 농공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 농림부 균특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 2020년 1,440백만원, 2021년 1,161백만원, 2022년 1,114백만원 지원
 - 산정근거 : 지방이양된 2020년부터 적용된 도비 평균액 적용

○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2,070,000천원

- 충북산업뉴딜 정책으로 입주기업 자동화시스템 구축지원
- '21년 ~ '22년 추진('21년 46개社, '22년 46개社 지원)

* 사전컨설팅 : 46개社 × 5백만원 = 230백만원

* 스마트공장 구축 : 46개社 × 40백만원 = 1,840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	목	세목	금액	산출내역
합 계			2,070,000	
사전컨설팅	직접비	연구활동비	187,500	○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4,000천원 × 46개社 = 184,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평가수당) 250천원 × 2회 × 7명 = 3,500천원
		연구과제추진비	9,400	○ 국내여비 50천원 × 46개社 × 현장방문 1회 = 2,300천원 ○ 사무용품비, 전산소모비 500천원 × 5개 = 2,500천원 ○ 자료인쇄비 50천원 × 46개社 = 2,300천원 ○ 회의 개최비(서류평가, 코디매칭회의, 결과평가) 767천원 × 3회 = 2,300천원
	간접비	경비	33,100	○ 인건비 및 운영기관 간접비(직접비의 17%) 196,900 × 17% = 33,100천원
스마트공장구축	-	-	1,840,000	○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소당 총사업비 200백만원 기준 도비 <u>40백만원 지원</u>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858,750	171,750	171,750	171,750	171,750	171,750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지원	6,15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70,000	2,070,000	-	-	-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세 출		3,491,750	1,421,750	1,421,750	1,421,750	1,421,750	9,178,750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171,750	171,750	171,750	171,750	171,750	858,750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지원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1,230,000	6,150,000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70,000	-	-	-	-	2,070,000
재원 조달		3,491,750	1,421,750	1,421,750	1,421,750	1,421,750	9,178,7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491,750	1,421,750	1,421,750	1,421,750	1,421,750	9,178,750
	지방세	3,491,750	1,421,750	1,421,750	1,421,750	1,421,750	9,178,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